

## 안심마을 시범사업 안전인프라 운영 지침

김은희 부연구위원

### 요약

- 국가의 안전관리 대상이 집단적인 피해를 낳는 대규모 재난뿐만 아니라 교통, 치안, 생활, 보건식품 등 다양한 원인과 형태의 소규모 안전사고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이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추진
-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중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인프라의 합리적 계획과 체계적 시행 및 관리를 위한 운영 지침을 제시

### 정책제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0, 동법시행령 제73조의 10에 따른 안전사업지구 지정 및 지원 대상의 범주에 안전인프라 사업 표준모델을 포함하는 등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할 필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건축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안전인프라 유관사업과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운영체계 개선 필요
- 마을 단위별 위해요인 분석, 안전인프라 우선순위 결정, 안전인프라 사업범위 결정, 예산 수립을 체계적으로 기획·실행할 수 있는 관리도구를 개발할 필요

# 1 안심마을 시범사업 개요

## ■ 시범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가의 안전관리 대상이 집단적인 피해를 낳는 대규모 재난뿐만 아니라 교통, 치안, 생활, 보건식품 등 다양한 원인과 형태의 소규모 안전사고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안전사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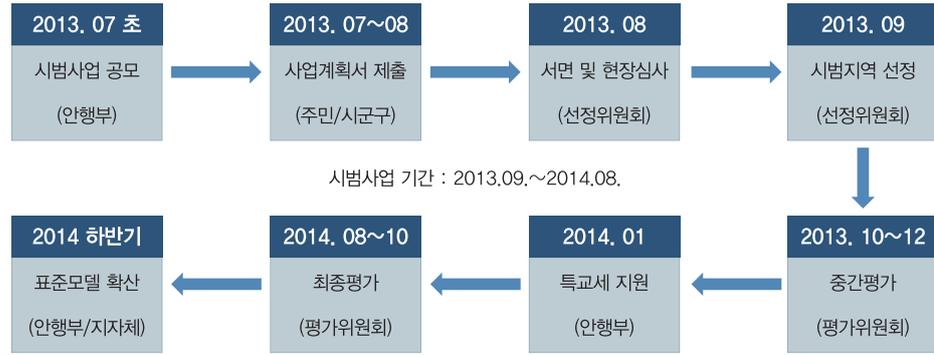
재난안전	교통안전	치안안전	생활안전	보건식품안전
풍수해, 화재	교통	범죄	추락, 익사,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 이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확산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추진
  - 안심마을은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가 총망라된 민관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생활권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가기 위한 거점으로서 2013년 안전행정부 주도로 기획·시행됨
- 안심마을 시범사업은 국가 중심의 안전시설 확충 또는 단기간 성과를 지양하고 지역 중심의 자발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의의를 둠
  - 안심마을 시범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며,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위해요소를 직접 발굴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안전관리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 ■ 시범사업 대상 및 추진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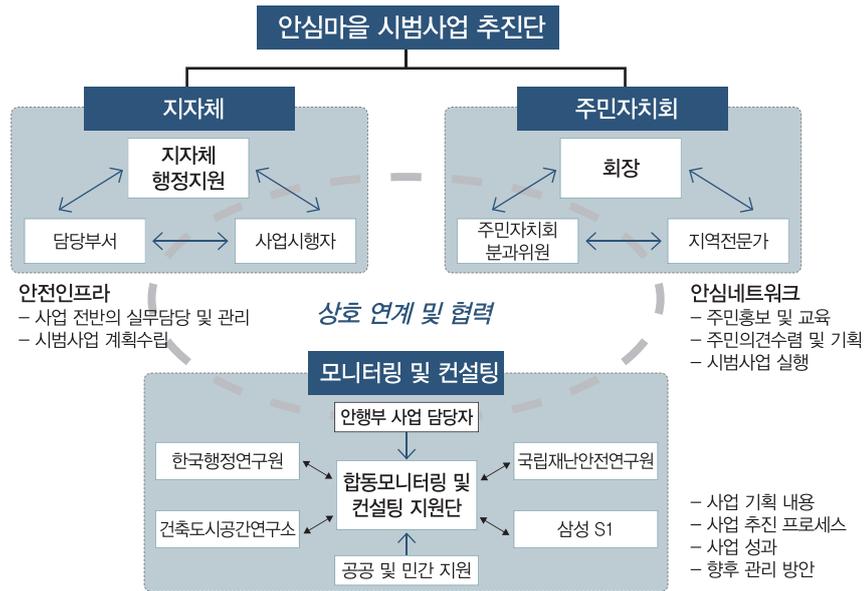
- 2013년 안전행 정부는 31개 지자체의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하였고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총 10개 지자체를 선정함
  - 지역 권역별로는 수도권 3개소(서울, 수원, 김포), 영남권 2개소(부산, 거창), 호남권 2개소(순천, 광주), 충청권 2개소(천안, 진천), 강원권 1개소(고성)이며, 지역 유형별로는 도시지역 5개소, 농촌지역 3개소, 특정지역<sup>1)</sup> 2개소로 구성됨
  - 지역별 사업대상의 공간 범위는 시·군·구 내 읍·면·동 단위로 추진
- 시범사업은 2013년 7월 공모를 시작으로 2013년 9월 사업 대상 선정, 2014년 8월 사업 완료, 같은 해 10월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015년 사업기획에 반영함

1) 산업단지,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 상가 재래시장 등 특정시설 인근지역을 일컫음



시범사업 추진절차

- 안심마을 시범사업은 각 지역 주민자치회가 사업 실행의 주체가 되고 지자체가 협업하도록 하였으며, 안전행정부·전문기관·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중앙 합동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추진
  - 중앙 합동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단은 안전행정부 주도로 한국행정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민간기업 삼성에스원이 참여하여 사업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자문역할을 수행



안심마을 시범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시행 체계

-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읍·면·동 단위로 시행되며 10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각 5억 원과 지자체 예산이 일부 투입됨
  - 안심마을 시범사업은 각각 5억 원의 국비(특별교부세)가 지원되었으며 안전행정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사업’ 등 타 사업 연계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투입됨

### 10개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개요

지자체	대상지역	사업목표	사업의 예산 (단위 : 백만 원)			지역 안전 문제 현안
			합계	국비	시군구비	
은평구	역촌동 • 0.31km <sup>2</sup> • 1,076명, 505세대	• 서민 보호 및 치안 강화 • 화재사고 방지 • 교통질서 확립	760.2	600	131.8	• 최근 3년간 가정집 절도(10건)가 가장 많음 • 노상 폭력(6건), 보행 중 교통사고(2건) 등 강력 범죄 발생률은 낮은 편에 속함
수원시	송죽동 • 0.13km <sup>2</sup> • 2,993명, 1,206세대	• 범죄예방 환경 구축 • 어린이 및 취약계층 보호	2088	1100	988	• 최근 3년간 절도(2,036건), 성폭력(96건)이 다수 발생, 치안환경이 취약함
광주 남구	봉선1동 • 0.75km <sup>2</sup> • 17,024명, 6,874세대	• 범죄예방환경 구축 • 교통질서 확립 • 노인 및 취약계층 보호	519	500	190	•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매해 늘고 있으며 5대 범죄 발생률은 다소 줄었음
순천시	중앙동 • 0.43km <sup>2</sup> • 4,139명, 2,014세대	• 취약계층 밀집지역 환경 개선 • 범죄예방 환경 구축 • 생활안전 환경 구축	735	600	135	• 재난안전 부분에 취약함
천안시	원성1동 • 0.25km <sup>2</sup> • 3,791명, 1,694세대	• 노인 및 취약계층 보호 • 범죄예방 환경 구축 • 안전 취약지역 환경 개선	1000	500	500	• 최근 2년간 폭력(126건), 절도(254건)가 다수 발생, 치안환경이 취약함
거창군	북상면 • 125.21km <sup>2</sup> • 1,629명, 824세대	• 범죄예방 환경 구축 • 재난대비	662	500	162	• 최근 3년간 도난사건(7건), 교통사고(24건) 발생으로 강력범죄 발생률이 낮음
진천군	진천읍 • 70.50km <sup>2</sup> • 1,500명, 670세대	• 서민안전 보호 • 지역균형발전 • 안전위해시설 정비	727.5	500	227.5	• 교통사고(1,337건) 발생률이 가장 높고 농산물 절도가 빈번함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 0.18km <sup>2</sup> • 4,736명, 1,891세대	• 어린이 및 취약계층 보호 • 범죄발생 우려지역 환경 개선 • 우범지역 해소	672	500	172	• 최근 2년간 교통사고(111건)가 가장 많고 노상 도난사건(5건) 발생으로 강력범죄 발생률이 낮음
김포시	양촌읍 • 0.54km <sup>2</sup> • 4,139명, 2,014세대	• 범죄예방 환경 구축 • 교통질서 확립	973	740	219	• 최근 3년간 폭력(274건), 절도(131건) 발생으로 강력범죄 발생률은 낮은 편에 속함
연산동	연산1동 • 0.85km <sup>2</sup> • 16,7185명 6,165세대	• 범죄예방 환경 구축 • 노인 및 취약계층 보호	601.1	600	1.7	• 2013년 기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없으며 절도(40건), 폭력(50건)이 다수 발생함

## 2 안심마을 안전인프라의 개념과 종류

### ■ 안전인프라의 개념

- 안전인프라는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주요 사업대상에 해당하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칭함
  -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주요 사업대상은 안전인프라 사업과 안심네트워크 사업으로 구성됨. 안심네트워크는 주민참여 및 협력네트워크를 위한 사회활동을 의미하고 안전인프라는 각종 물리적 공간환경 요소에 해당함

## ■ 안전인프라의 종류

- 안전인프라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위해요인에 따라 범죄안전인프라, 교통안전인프라, 재난안전인프라, 생활안전인프라로 구분
  - 범죄안전인프라는 절도, 폭력 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공간과 시설물을 의미하며 우범지역 환경 정비, 보안등, CCTV, 비상벨 설치 등이 있음
  - 교통안전인프라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공공공간과 시설물로서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사업으로 보행로 조성, 과속방지턱 설치, 스쿨존 설치, 신호표지판 설치 등이 있음
  - 재난안전인프라는 태풍, 폭설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 인적재난 대비를 위한 공공공간 및 시설물을 의미하며 관련 사업으로는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가스배관 정비 등이 있음
  - 생활안전인프라는 미끄러짐, 넘어짐, 충돌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쉽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공공공간 및 시설물을 의미하며 관련 사업으로는 노후한 보행로 바닥포장 정비, 안전난간 설치, 가로변 방치시설물 정비 등이 있음
- 소유주체에 따라 공공부문 안전인프라와 민간부문 안전인프라로 구분
  - 공공부문 안전인프라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공공간 및 시설물을 의미하며 도로,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공공건축물, 공공설치물 등이 있음
  - 민간부문 안전인프라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관련된 것으로서 가로에 면한 담장, 울타리, 가스배관 등 사고 발생 시 공중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유 시설에 한정함

안전인프라 사업유형과 사업예시 및 주민참여 방식

구분	안전인프라 세부대상	
공공부문 안전인프라	도시기반시설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주요 공공공간
	건축물 등 설치물	공공건축물, 가로등, 화단, 안전표지판, CCTV, 예·경보시설 등
민간부문 안전인프라	건축물	폐가, 공가 등
	대지 주변 시설물	비탈면 처리, 옹벽·축대, 배수로 정비
	설비 시설물	담장, 역류방지설비, 차수판, 소방설비, 간판·첨탑 등

## ■ 안전인프라 사업의 종류

- 안전인프라 사업은 사업대상 및 대응방법에 따라 ‘공간조성 및 정비사업’과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구분
  - 공간조성 및 정비사업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거나, 이미 존치하던 위험 공간 및 시설물을 안전하게 정비하는 사업에 해당함

- 시설물 설치사업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보완하여 설치하는 사업에 해당함

공간 조성 및 정비	 <p>우범지역 정비(범죄예방인프라)</p>	 <p>보행로 설치(교통안전인프라)</p>
	 <p>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재난안전인프라)</p>	 <p>불량 도로 정비(생활안전인프라)</p>
	 <p>야간조명등 설치(범죄예방인프라)</p>	 <p>통학버스정류장 사인 설치(교통안전인프라)</p>
	 <p>골목소화전 설치(재난안전인프라)</p>	 <p>위험계단 난간 설치(생활안전인프라)</p>

시설물 설치

### 3 안심마을 안전인프라 운영지침

#### ■ 안전인프라 운영지침의 필요성

-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통한 사업내용 타당성 확보
  - 2014년도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경우 지역 안전문제 현안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안심네트워크와의 연계성 부족 등 사업 추진과정의 불합리함이 문제로 제기됨
- 안심마을 시범사업 추진·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사업계획 방향 제시 필요
  - 사업대상 지역의 위해요인 발굴, 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세부사업 결정과 실행을 위한 기본방향 정립 필요
- 안심마을 시범사업 운영주체의 효율적 업무 수행 지원
  - 안전인프라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안심마을 시범사업 운영주체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지원기반 마련 필요

#### ■ 안전인프라 운영지침 방향

- 안전인프라 관련 기본정보 제공
  - 안심마을 시범사업 안전인프라의 개념 및 종류, 사업내용 등 기본정보 제공
- 안전인프라 사업 결정 방법 및 주안점 명시
  - 안심마을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안전인프라 사업의 결정 주체, 시기, 방법을 제시하고 진행과정에 활용 가능한 도구 및 컨설팅 방식을 제시
  - 안전인프라 사업 결정을 위한 사전 점검 기준 제시
- 예산수립 기준 제시
  - 2014년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안전인프라 사업종류별 소요 예산 참고기준 제시
- 유지 및 관리,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방법 제시
  -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완료 후에도 안전인프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실행 가능한 방법 제시

#### ■ 안전인프라 운영지침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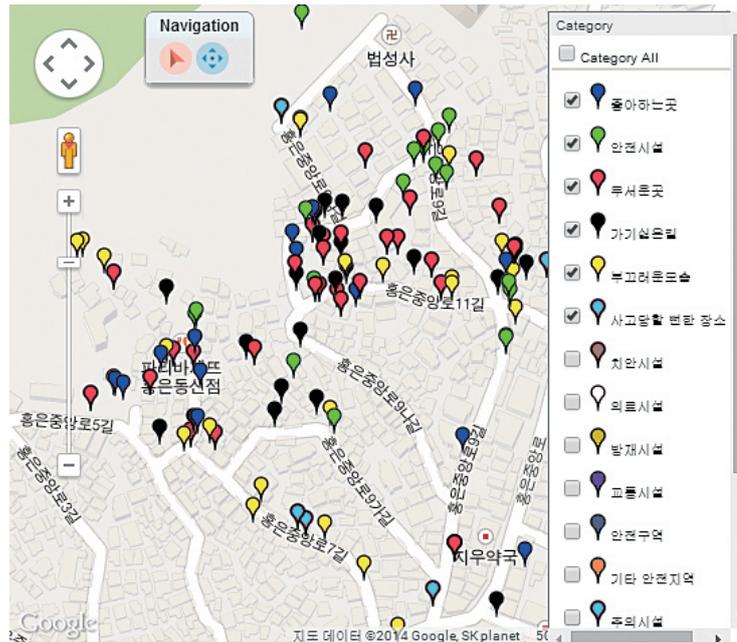
- 사업주체 및 시기
  - 안전인프라 사업 주체는 안심마을 시범사업 추진협의체(지자체 및 주민자치회 등)이

고, 용역 및 공사 전문 업체 발주를 통해 실행하며 예산은 지자체가 집행

- 안전인프라 사업은 안심마을 시범사업 모집 공고 이후 사업 기획 단계에서 결정하  
되, 사업 진행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 추진협의체 협의를 거쳐야 하고 공사  
발주 이전에는 최종 계획을 완료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은 상위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방법 및 도구

- 안전인프라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대상지역의 위해요인을 발굴하고 안전취약구역과  
안전취약인구를 규정하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안전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 ① 위해요인의 발굴 :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가
  - ② 안전취약공간, 안전취약인구 파악 : 누가, 어디서 피해를 입는가
  - ③ 사업대상 결정 : 어떠한 대응책이 필요한가
- 위해요인의 발굴은 지방 경찰청, 소방서 등이 보유한 각종 사건·사고의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함과 동시에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조사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참여자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안전지도2)’와 ‘안전인프라 지표3)’  
등의 도구를 활용



커뮤니티 맵핑 사례 - 홍은1동 안전지도

2) 사업대상지역의 안전위해요인을 발굴하여 지도상에 표기함으로써 안전인프라 사업결정의 판단근거로 활용되며, 지도 위에 직접 표기하거나 스마트폰 앱(Application)을 이용하여 작성이 가능함  
3) 안전인프라 유형별로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안전인프라 사업의 종류를 파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데 활용됨

안전인프라 지표 일부(범죄예방인프라)

인프라 종류	세부종류	1차		2차				
		지표 선정	중요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물리적 환경 개선	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	■				
		보안등 설치						
		블랙박스 설치	●				■	
		CCTV 설치	●				■	
		안심 비상벨 설치						
		경계펜스 설치(울타리)	●		■			
		동네 표지판 설치						
		바닥포장재 구분설치						
		방법창 설치(안심방법등 설치)	●		■			
		벤치 설치						
		출입통제장치(자물쇠) 설치						
		우편함 설치	●			■		
		조경 설치						
		기계경비 가입(세콤)						
	공간 조성 및 정비	주거 환경 개선	노후된 건물 개선					
			담장 정비	●	■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도로 정비					
			명확한 주소 표시					
		벽화 조성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					
			낙서 없는 골목길(불법부착물 제거) 조성	●			■	
			바닥 디자인					
		보도 환경 조성	바닥 디자인					
			이면골목길 정비	●	■			
			보도 · 도로 파손 수리					
		공원 조성	쓰레기 없는 골목길 조성					
우범지역 공원 조성								
공원 내 CCTV 및 방법초소 설치	●		■					
범죄지도(Crime Map)	●		■					
관리 시스템	범죄예방 시스템	범죄예방교육	●	■				
		SOS국민안심서비스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범죄자료 데이터 공개						
		스마트 ICT 활용						
		경찰 순찰 횡수 증대	●	■				

• 컨설팅

- 시범사업 추진협의체는 안전인프라의 기능 및 디자인 제고를 위해 건축, 소방, 전기, 토목, 조경,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컨설팅 협조를 받아야 함
- 전문가 컨설팅은 월 1회 이상, 사업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안전인프라 사업이 결정되는 시점 등 주요 사업 단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안전인프라 사업결정 시 주안점

- 안전인프라 사업 결정에 앞서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합목적성, 안전인프라 세부내용의 적절성, 지역공동체 협업의 용이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대효과를 예측해야 함

- 안심마을 시범사업으로서의 합목적성 :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목적과의 부합성, 지역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특성에 대한 고려, 사업 완료 후 실질적인 효과와 성과
- 안전인프라의 세부 내용의 적절성 : △지역 안전문제 해결 여부, △주민의 안전 활동 네트워크와 상관성,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계획 중인 사업들과의 연계성, 주어진 예산 범위와 기간 내 실행 가능성, △추후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용이성
- 공동체 협업의 용이성 : △사업추진협의체와 지역주민, △지역공동체의 협조 가능성, △토목, 조경, 전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인프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부서 간 협력과 지원의 용이성

• 예산의 수립

- 지역별 안전인프라 사업이 결정되면 대상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계획을 수립
- 예산집행은 지자체가 수행하되, 사전에 사업추진협의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1차 안심마을 시범사업 안전인프라 사업 예산집행 내역

\*미확인 금액

		구분	예산 (평균, 백만 원)			구분	예산 (평균, 백만 원)			
범 죄 안 전 인 프 라	시설물 설치	CCTV설치	85.1	교 통 안 전 인 프 라	공 간 조 성 및 정 비	도로 정비	70			
		비상벨 설치	97			통학로 정비	123			
		보안등 설치	87			보도환경 정비	160			
		펜스 설치	17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88			
		가로등 설치	50			미끄럼방지시설 보도정비	136			
		안심표찰 설치	20			취약지역 도로포장	*			
		바닥조명 설치	70			사고다발지역 선형개선	23			
		무인택배함 설치	10			가로수 개선	4.4			
		지킴이집 설치	43			과속방지턱 정비	*			
		공원 등 설치	50			도막형 바닥포장	*			
		불법광고물 방지설치	35			주차금지 노면표시	*			
	공간 조 성 및 정 비	담장 도색 및 벽화 조성	68			재 난 안 전 인 프 라	사 실 물 설 치	소화전 설치	30	
		공원 및 정원 조성	107					침수방지시설 설치	*	
		보행산책로 조성	34					자동제세동기 설치	30	
골목길 가로 정비	270	공 간 조 성 및 정 비	배수로 정비	150						
안심거리 조성	285		공중선 정비	*						
공원 정비	23	주거환경 개선	323							
교 통 안 전 인 프 라	시설물 설치	승강장 설치	7	생 활 안 전 인 프 라	사 실 물 설 치			제세동기설치(심장충격기: AED)	30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11					핸드레일 설치	12.5	
		안전표지판 설치	*					자전거 거치대 설치	1	
		과속방지턱 설치	*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	45	
		반사경 설치	*					독거노인 안전시설 설치	*	
		안전시설 설치	214					취약지역 보도블록 및 아스팔트 정비	*	
		RED ZONE 설치	*					공 간 조 성 및 정 비	공원 안전환경 개선	76
		방호울타리 설치	*						전기점검 및 전기설비 보수	40
		점멸등 설치	26			빈집철거 및 텃밭공사	36			
		볼라드 설치	36			중단건축물 안전시설 정비사업	5			
						독거노인 생활환경 개선체계 구축	5.3			

- 유지 및 관리
  - 안심마을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함
  - CCTV는 자율방범대 또는 야간순찰대가,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은 녹색어머니회가 관리하도록 하는 등 시범사업 추진협의체 구성원과 지역주민, 지역공동체가 각각의 역할에 맞게 책임을 분담하여 수행
  - 또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안전활동 네트워크 및 각종 지역행사와 연계한 거점장소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위를 유도하도록 함
  - 지자체는 안전인프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수립 시 반영하고 지역공동체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운영을 통해 발생된 수익을 안전인프라 시설의 유지·관리에 투입할 것을 권장
  
- 모니터링
  - 안심마을 시범사업 추진협의체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행 및 완료 단계까지 사업 추진과정을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야 함
  - 사업이 완료된 후 매 1년마다 시범사업 추진협의체 및 중간지원조직, 유관기관,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도록 함
  - 효과분석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경찰서, 소방서의 안전사고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활용하도록 함

## 4 정책제언

### ■ 안심마을 시범사업 제도화

-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인프라 사업 표준모델의 정립·정착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시행과 확산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10, 동법시행령 제73조의 10에 따른 안전사업지구 지정 및 지원 대상 범주에 안전인프라 사업 표준모델을 포함하는 등 안심마을 시범사업 주요내용의 법제화 추진

### ■ 안심마을 시범사업 운영체계 개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건

축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인프라 유관사업과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운영체계 개선

- 안전인프라에 사용이 국한된 안심마을 시범사업 예산 집행기준 개선
  - 주민 주도형 안심마을 시범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행 안전인프라에 제한적으로 집행 가능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함과 더불어 주민활동 등 간접비에 실행 가능한 예산 지원 방식을 개선
- 안심마을 시범사업 내실화를 위한 안전인프라 사업기획 지원 및 컨설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의무 도입과 운영

### ■ 안전인프라 계획 및 시행을 위한 도구 개발

- 마을단위별 위해요인 분석, 안전인프라 우선순위 결정, 안전인프라 사업범위 결정, 예산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실행할 수 있는 관리도구의 개발 및 운영
  -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안전지도 작성, 안전 위해요인별 안전인프라 지표 작성 등 체계적인 위해요인 분석 및 분석 결과 활용을 위한 표준 매뉴얼 개발
- 주민, 주민공동체,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안심마을 시범사업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리적인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을 위한 코디네이터 의무 도입

김은희 부연구위원 (044-417-9622, ehkim@auri.re.kr)

